



한국콘텐츠진흥원

## -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서 -

한국콘텐츠진흥원, NHN(주),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협약기관” 이라한다) 은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제 1조(목적)

본 협약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개발한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각 협약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한다.

### 제 2조(협력분야)

협약기관은 제 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1.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 활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업무협의
2.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한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제고를 위한 협력
3. 기타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반 노력에 대한 상호협조

### 제 3조(협력방법)

협약기관은 제 2조에서 정한 협력분야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서비스 한다.

1. 협약의 목적을 위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개발한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를 협약기관 (NHN(주), (주)다음커뮤니케이션)에 제공한다.
2.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지식백과사전에 재분류하여 서비스 한다.
3. 지속적인 지식백과 서비스를 위하여 협약기관은 상호협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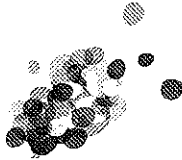
### 제 4조(콘텐츠활용)

협약기관은 제공받은 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제공받은 콘텐츠서비스는 제 3조의 이용범위에 국한하며 비영리적 목적으로 제한한다.
2. 협약기관은 제공받은 콘텐츠 서비스 활용 시 출처 또는 사이트링크 등 정보를 표기한다.
3. 제공받은 문화원형디지털 콘텐츠는 본 협약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 제 5조(콘텐츠의 소유)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해서 제공되는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 제 6조(협약내용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기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 제 7조(협약의 해지)

협약기관이 대·내외적으로 본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해지에 관한사항은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 제 8조(권리·의무 승계)

본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기관의 대표자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권리·의무는 포괄승계 한다.

### 제 9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협약기관은 이상의 협약 내용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양 기관 대표 책임자가 협약서에 서명하고 양측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12월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원 장 : 홍 상 표

서 김 한 곤

NHN(주) 이-이

대 표 : 김 상 현

김 상 현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대 표 : 최 세 훈

최 세 훈